



전 임원에 대한 경쟁사 근무금지명령의 항소심 사건

47

Bimbo Bakeries USA, Inc. v. Botticella, 613 F.3d 102 (201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연방 제 3 순회 항소법원	사건번호	10-1510
판결 일자	2010. 7. 27.	판결 결과	원심 유지
원고 (피항소인)	빔보 베이커리 (Bimbo Bakeries USA, Inc.)		
피고 (항소인)	크리스 보티첼라 (Chris Botticella)		
참조 법령	펜실베이니아 통일영업비밀법 ¹⁾ 12 Pa. Cons.Stat. Ann. § 5302 (West 2004)		
참조 판례	Rohm and Haas Co. v. Lin, 992 A.2d 132, 143 n. 4 (Pa.Super.Ct.2010), Crum v. Bridgestone/Firestone North American Tire, LLC, 907 A.2d 578, 585 (Pa.Super.Ct.2006), Air Prods. & Chems., Inc. v. Johnson, 442 A.2d 1114, 1120 (Pa.Super.Ct.1982)		
영업비밀	제빵 제조기술, 영업전략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필연적 공개 원칙, 불리추정, 회복 불가능한 손해, 공익		

02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4대 제빵 기업 중 하나로서 전국에 걸쳐 여러 브랜드의 제빵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캘리포니아주 사업부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제품, 영업전략 등에 대한 광범위한 비밀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 피고는 2009. 3. 13. 원고와 비밀유지, 경쟁금지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전직금지약정은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인 호스티스 사로부터 텍사스주 사업부의 부회장직을 제안 받았고 2009. 10. 15. 이를 수락하여 2010. 1.부터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다가 2010. 1. 13. 퇴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경쟁사 근무를 당분간 금지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이에 항고하였고 본 판결은 항고심 판결이다.

1) 원문 <http://tsi.brooklaw.edu/cases/location/pennsylvania/statute>

03 주요 쟁점

원 고



피 고

피고는 경쟁사의 고용 제안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영업비밀에 계속 접근하여 취득하였으며, 퇴사 전 원고의 다수의 영업비밀을 복사하였다.

기술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예비적 금지 명령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영업비밀 공개가 필연적일 때에만 적용된다.

피고의 예상된 직무범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공개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예비적 금지명령 심사에서 증인 거부는 증거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에 대해 불리추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금지적 구제수단이 없으면 원고가 손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전직금지가 아니라 영업비밀 공개금지를 통해서도 방지할 수 있다.

04 판결 요지

피고의 증언거부에 대해 불리추정을 한 것이 오류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경쟁사로부터의 고용 제안을 알리지 않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이후에도 원고의 비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였고, 외장 저장 장치에 원고의 영업비밀을 복사하였음을 볼 때 피고가 호스티스에게 근무할 때 원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자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본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전직금지가 아니라 영업비밀 공개금지가 원고의 손해를 예방할 적절한 수준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예비적인 단계에서는 피고가 원고에서의 마지막 근무 시기 동안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볼 때 더 강한 수준의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피고에 대하여 본안 판결까지 2개월간 근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나 피고가 호스티스에서 근무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크고, 피고는 11주간의 휴가 급여를 계속해서 받는다는 점을 볼 때, 원고의 더 큰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관계의 일시적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법원의 일시적 제한명령은 정당하다.

영업비밀 불가침성과 비밀유지약정 유효성 유지는 일반적인 공익에 부합하고, 원고의 영업비밀 부정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피고의 임시적 고용제한으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05 Key Point

전직 시 영업비밀이 필연적으로 공개될 것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영업비밀 공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만으로도 예비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근무의 일시적 제한 시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권리를 비교 형량 하여 판단하게 되며,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도 고려하게 되므로, 영업비밀 보유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